

#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1. 26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3. 11. 24
- 다. 회부일자 : 93. 11. 24
- 라. 상정일자 : 93. 11. 26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지금까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84. 5. 15) 지침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93. 10. 6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가 시달됨에 따라 구단위 조례를 제정하여 구단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관청 관여 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전 협의조정 및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심의
-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원 20인(관련기관 및 단체장, 구의회의원, 소속공무원)내외로 구성
- 실무위원회는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10명내외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전문가, 소속공무원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며 위원회의 여비길비수당 및 위원의 수당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 제정 근거는 장관 특별지시 제4호(84. 5. 15)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무부 지경 13600-320(93.9.9) 및 대구시 상정 41210-1081 (93.10.6)호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본조례 제정(안)은 13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단위 물가대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관청 관여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답변요지

- 조례를 만들기전 현재까지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현황 및 추진실적은?
  - 구성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4호에 의거 관련기관 세무서 달서경찰서 개인서비스 요금업체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요금인상 신청 3건중 1건은 불가, 2건은 보류되었습.
  - 본 조례안이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광호텔객식료만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도시가스과 개인 서비스 요금등은 조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조례 명칭이 달서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가 모든 물가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체육시설 이용 및 관광호텔에 관한 물가대책 위원회란 조 로 명칭을 변경 할 수 없는지?
  - 광역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9개항목(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등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광호텔 객식료의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업종이 위임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서민 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미용 목욕료등은 자율가격이 되어 있으므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지도가격으로 하여 허가시 행정지도를 실시하나 업체가 위반시 단지 세무서와 경찰서에 협조 요청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임.
- 또한 명칭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 목록이 이관될 것을 대비하여 통합적인 현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없음.